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내부 운영규정

시행일 : 2012. 3. 1

개정일 : 2018. 4. 28

2023. 8. 9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석·박사(통합) 과정 입학 관련 사항

### 제2조(지원자격)

-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 대상자의 지원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면접을 통해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학과 교수들의 강의와 논문 지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5급 이상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으로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실적과 전문분야 경력 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 제3조(지도교수의 선정)

-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6조 제4호에 의해 지도교수 선정 업무가 주임교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도학생의 수급 조절 및 교수와 원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교수 선정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1. 1학기 중반 이후 신입생들과 교수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수와 원생의 관심 분야 및 선호를 상호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 1학기 원생은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에게 세부 전공 선택 및 연구주제, 선호하는 지도교수를 3순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임교수는 이 자료를 근거로 소속교수들에게 원하는 지도학생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정된 지

도학생에게 통보한다.<2023. 8. 9. 개정>

3. 1차에서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은 원생은 선정 가능한 지도교수 중 2순위까지 명단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는 해당 교수와 협의 후 해당 교수가 승인할 경우 해당 원생에게 통보한다.

#### 제4조(지도교수의 변경)

- ① 대학원 학칙 제37조 (3항)에 의해 학생과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제37조 (4항)에 의해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장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시행 및 면제 조건

#### 제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 외국어시험의 시행 및 면제 )

-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내국인의 경우 영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이다.

#### 제6조(학위청구 자격시험 : 종합학력시험 시행)

- ①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와 종합학력시험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석사2과목, 박사 4과목 이상 학력시험을 치러야 하며, 동 세칙 동조 제5항에 의해 종합학력자격시험의 시행 및 면제 조건 등에 관하여 학과주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종합학력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종합학력시험 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과목당 5문제 이하로 제출하고, 주임교수는 문제를 선정하여 종합학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종합학력시험의 면제) <2023. 8. 9 개정>

- ① 주임교수는 해당 원생이 학진 등재지 혹은 SCI급(SSCI, SCI, SCOPUS, A&HCI)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 한하여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이어야 한다.
  1. 학생의 단독연구
  2. 학생이 참여한 2인 공동연구

## 제 5 장 학위논문심사 규정

### 제8조(학위논문 심사)

논문 작성과 제출,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외에 학과 내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1.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모든 학위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는 논문 예비발표 전에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Research Proposal)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논문발표는 예비발표와 공개세미나로 이루어지며, 매 학기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도교수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 ① 석사과정 원생은 논문학기 직전 학기(일반적으로 3학기)에 학사일정 마지막 일로부터 10일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석사논문의 진도가 80% 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논문 예비발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논문심사를 끝내고자 하는 석사과정 원생은 4월 또는 10월의 예비발표를 통과해야 하며, 석사과정 논문의 본 심사는 매 학기 1회로 한정한다.
- ③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석사과정생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의 2에 의해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을 대신하여 4학기에 전공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④ 논문 연구계획서의 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제시)
  3. 연구의 틀 및 방법론
  4. 연구의 주요내용

## 5. 참고문헌

### 제10조(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예비발표 및 공개세미나)

- ①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계획서 발표는 해당 원생의 학기에 상관없이 학기 중에 할 수 있으나, 논문예비발표는 논문의 진도가 90% 이상인 논문에 한해서 발표를 허용한다.
- ② 논문예비발표 및 공개세미나에서 소속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본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본심사 회부 판정은 심사 참여 교수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예비발표는 동일 학기에 2회까지만 허용된다.
- ④ 학진 등재지(등재후보지 및 도시부동산연구소 학술지 포함) 혹은 SCI급(SSCI, SCI, SCOPUS, A&HCI)의 학술지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 경우(공인된 게재 예정 포함) 논문 게재 점수 100점 이상 달성 시 논문예비발표의 면제, 논문게재 점수 160점 이상 달성 시 논문공개세미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논문 중 최소 한 편은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어야 한다.

<2023. 8. 9 개정>

1. 학생의 단독연구 (등재지 150점, 등재후보지 100점, 도시부동산연구소 학술지는 등재후보지와 동일한 점수로 같음, IF 적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학생이 참여한 2인 공동연구일 경우 해당 원생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면  $[1/(n+1)]*2$
3. 2인 공동연구일 경우 해당 원생이 공동연구(단순참여)일 경우  $1/n+1$

### 제11조(박사학위논문의 심사)

- ① 박사학위 논문의 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규정의 조건을 충족한 원생만이 할 수 있다.
- ② 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3회까지 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장소는 교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학 연한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심은 전회의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

## 제 6 장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지침 준수 강화

### 제12조(학위논문 작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요람과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지침을 참고하여 논문의 기본 형식요건을 갖춘 논문에 대해서만 예비발표 및 본 심사를 허용한다.

- ① 예비발표에 참여하는 원생은 예비발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예비발표 심사용 논문을 학과교수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예비발표 후 예비발표 논문에 대한 소속 교수들의 심사의견을 취합하여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에게 본심사 회부 여부를 통보한다.

### 제13조(학위논문 제출 지침 준수 의무)

① 학위논문의 체제를 올바르게 갖추어야 하며, 논문의 구성은 각 호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서론에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택적으로 3) 분석의 틀 및 내용 구성

2. 본론에는

- 1) 해당 주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 기존(선행)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동향고찰
- 3) 관련 주제의 현황 자료 분석
- 4) 실증 분석 및 사례 연구 결과 해석  
또는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 기술

3. 결론에는

- 1) 연구결과의 요약
- 2)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시사점도출

②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2012.3.1.)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에서 종합학력시험 관련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입학자들도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새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